

# 심사보고서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78
----------	-----

2023. 9. 19.(화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동우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9월 7일

-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동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북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‘신·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 사업’, ‘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·운영 사업’을 추가함으로써 관련된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신규사업 추가(안 제6조)

-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 사업
-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·운영 사업

## 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에 급변하는 인구구조·산업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를 고려하여 '신·재생에너지'와 '스마트농업' 관련 신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.
- 2005년 충북개발공사 조례 시행 당시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를 타 시도 개발공사의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4조는 “정부는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,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을 장려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함.
- 「제5차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기본계획」(‘20.12.)에서는 최우선 추진전략으로 “보급혁신”을 채택하고, 참여주체의

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체계 구축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11조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,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 「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제3조는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사업의 범위에 ‘신·재생에너지’와 ‘스마트농업 생산물’에 관한 사업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, 조례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#### ○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6조제11호에 ‘신·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 사업’을 추가함.
- 안 제6조제12호에 ‘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·운영 사업’을 추가함.

- 각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‘23. 8. 29.~‘23. 9. 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#### 다. 검토의견

○ 「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조례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등

#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동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8월 24일  
발 의 자 : 이동우, 김종필, 김호경,  
박지현, 박진희, 변종오,  
유재목

## 1. 제안이유

본 조례는 충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바, 「충북개발공사 조례」 제6조(사업)의 범위에 ‘신·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 사업’, ‘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·운영 사업’을 추가함으로써 관련된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안 제6조(사업)의 범위 추가

- 11.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 사업
- 12.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·운영 사업

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

라. 조례안 예고 : 2023.8.29.~2023.9.4.(의회홈페이지)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 사업
12.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·운영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제6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11. ~ 13.</u>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사업) ①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·보급사업</u></p> <p><u>12. 스마트농업 생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단지 조성 및 관리·운영 사업</u></p> <p><u>13. ~ 15.</u> (현행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지방공기업법[시행 2022. 7. 12.]

제2조(적용 범위)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.

1.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,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2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
3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업
4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(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)

### 제49조(설립) ① 생략 <개정 2013. 6. 4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- ③ 생략
- ④ 생략

### □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[시행 2015. 10. 02.]

제22조(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 ①도지사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10. 2>

②도지사는 신·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.<신설 2015. 10. 2>

③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10. 2>

#### 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[시행 2022. 7. 5.]

제11조(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,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 22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·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, 경영지도,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 22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 제1호

### ○ 사 유

- 본 조례는 관련된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신설(추가)하는 주요 내용으로,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